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平成19년(2007년) 5월 18일 법률 제51호
최종개정: 平成26년(2014년) 6월 20일 법률 제75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2장 국민투표의 실시

제1절 총칙 (제2조-제10조)

제2절 국민투표 홍보 협의회 및 국민투표에 관한 주지 (제11조-제19조)

제3절 투표인명부 (제20조-제32조)

제4절 재외투표인명부 (제33조-제46조)

제5절 투표 및 개표 (제47조-제88조)

제6절 국민투표분회 및 국민투표회 (제89조-제99조)

제7절 국민투표운동 (제100조-제108조)

제8절 벌칙 (제109조-제125조)

제3장 국민투표의 효과 (제126조)

제4장 국민투표 무효 소송 등

제1절 국민투표 무효 소송 (제127조-제134조)

제2절 재투표 및 경정결정 (제135조)

제5장 보칙 (제136조-제150조)

제6장 헌법개정발의를 위한 국회법의 일부 개정(제151조)

부칙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일본국헌법의 개정(이하 「헌법 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에 대한 투표(이하 「국민투표」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개정발의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국민투표의 실시

제1절 총칙

(국민투표일)

- 제2조** ① 국민투표는 국회가 헌법개정을 발의한 날(국회법(1947년 법률 제79호) 제 68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국회가 일본국헌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본국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한 것으로 되는 날을 말한다. 제100조의2에서도 같다)부터 기산하여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한 날에 한다.
- ② 내각은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일에 관한 의안을 송부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총무대신을 경유하여 해당 국민투표일을 중앙선거관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회는 전항의 통지가 있으면 신속하게 국민투표일을 관보로 고시하여야 한다.

(투표권)

제3조 일본국민으로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구역)

제6조 국민투표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전체 구역에서 실시한다.

(투표구 및 개표구)

제7조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은 국민투표의 투표구 및 개표구에 대해서 준용한다.

(국민투표 집행에 관한 사무 관리)

제8조 ① 국민투표 집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5조의3에서 제5조의5까지의 규정은 국민투표 집행에 관한 사무에 대해 준용한다.

(국민투표 감독의 공정 확보)

제9조 공직선거법 제7조 규정은 국민투표 감독에 관한 규정의 집행에 대해 준용한다.

(특정지역에 관한 특례)

제10조 교통이 불편한 섬 기타의 지역에서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절 국민투표 홍보 협의회 및 국민투표에 관한 주지(周知)

(협의회)

제11조 국민투표홍보협의회(이하 이 절에서 「협의회」라 한다)에 대해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의회의 조직)

제12조 ① 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원의 수는 헌법개정 발의가 이루어진 때 중의원 의원이었던 자 및 해당 발의가 이루어진 때 참의원 의원이었던 자 각 10인으로 하고, 그 예비원의 수는 해당 발의가 이루어진 때 중의원 의원이었던 자 및 해당 발의가 이루어진 때 참의원 의원이었던 자 각 10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 의원(議院)에서 각 회파(會派)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회파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다만, 각 회파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회파에 할당하여 선임한 경우, 헌법개정 발의에 관한 의결에서 반대에 표결한 의원이 소속된 회파로부터 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각 의원에서 해당 회파에도 위원을 할당하여 선임하도록 가능한 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예비원의 선임에 대해 준용한다.

⑤ 위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헌법개정 발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자가 속해 있던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었던 예비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의 권한)

제13조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협의회의 사무)

제14조 ① 협의회는 아래에 열거하는 사무를 한다.

1. 국회 발의에 관한 일본국헌법의 개정안(이하 「헌법개정안」이라 한다)과 그 요지 및 헌법개정안에 관한 신규대조표, 그 외 참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알기 쉬운 설명과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때 나온 찬성의견 및 반대의견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의 원고작성

2. 제65조의 헌법개정안의 요지작성

3.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4. 전3호에서 열거한 것 외, 헌법개정안의 홍보에 관한 사무

② 협의회가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헌법개정안

과 그 요지 및 헌법개정안에 관한 친구대조표, 그 밖에 참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에 관한 기재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및 반대의견의 기재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는 것으로 한다.

(협회의 의사(議事))

- 제15조** ① 협의회는 헌법개정 발의가 이루어진 때 중의원 의원이었던 위원 및 해당 발의가 이루어진 때 참의원 의원이었던 위원이 각각 7인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② 협의회 의사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결정한다.

(협회의 사무국)

- 제16조** ①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참사(參事) 기타의 직원을 두고, 참사 중 1인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회장의 감독을 받고 서무를 장리(掌理)하며 다른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 ⑤ 사무국장 기타의 직원은 협의회 회장이 양의원 의장의 동의 및 양의원 의원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 ⑥ 전 각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규정한다.

(양원의장협의결정에의 위임)

- 제17조**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규정한다.

(국민투표공보의 인쇄 및 배포)

- 제18조** ① 협의회는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투표공보의 원고를 작성한 때에는 이것을 국민투표일전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회는 전항의 국민투표공보의 원고 송부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본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국민투표공보의 원고 사본을 송부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국민투표공보를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원문 그대로 인쇄하여야 한다.
- ④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은 국민투표공보의 배포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해당 선거에 사용해야 할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선거일전 2일」은 「국민투표일전 10일」로, 동조 제2항

중 「선거인」은 「투표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

(국민투표방법 등에 관한 주지 등)

제19조 ① 총리대신, 중앙선거관리회,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즈음하여 국민투표방법,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 기타 국민투표절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회는 국민투표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투표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투표 당일 그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제3절 투표인명부

(투표인명부)

제20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는 투표인명부의 등본(전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혹은 일부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32조의 경우도 같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인명부는 해당 국민투표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투표인명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 ① 투표인명부에는 투표인의 성명, 주소, 성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전조 제2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하는 투표인명부에 있어서는, 기록)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는 시정촌의 구역을 나누어 2 이상의 투표구를 둔 경우에는 그 투표구마다 편제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투표인명부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피등록자격 등)

제22조 ① 투표인명부 등록은 국민투표일 현재 연령 만 18세 이상인 일본국민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다.

1. 국민투표일전 50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등록기준일」이라 한다)에 해당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
2. 등록기준일의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자로, 등록기준일에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등록기준일 후부터 해당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날까지 다른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적이 있거나 해당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날에 다른 시정촌의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촌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자를 투표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

(등록)

제23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촌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되는 자격을 가지는 자를 투표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열람)

제24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때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규정하는 기간,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해당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전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인명부에 기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25조 ①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②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 제9조 제4항, 제19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및 제53조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규정(행정불복심사법 제44조를 제외한다) 중 ‘심리원’은 ‘행정청’으로 행정불복심사법 제9조 제4항 중 ‘심사청’은 ‘일본국헌법개정절차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심사청」이라 한다)로, 동법 제24조 제1항 중 ‘제45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결로’라는 것은 ‘결정으로’로, 동법 제31조 제2항 중 ‘심리관계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동법 제44조 중 ‘행정불복심사회 등으로부터 자문에 대한 답을 받은 때(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심리원의견서가 제출된 때,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議)를 거친 때)’는 ‘심리절차를 종결한 때’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소송)

제26조 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소송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2항」은 「일본국 헌법개정절차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2항」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9조 제1항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19조 제1항 및 제3항의 소송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9조 제1항 중 「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제207조 혹은 제208조에 따라 한 선거에서의 당선효력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제2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의 후보자였던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제211조에 따라 공직의 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효력 혹은 입후보 자격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또는 선거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그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효력에 관해 제207조 혹은 제208조에 따라 이것을 다투는 청구」는, 「하나의 열람에 관한 투표인명부예의 등록 또는 투표인명부에서의 말소에 관해 다투는 2 이상의 청구」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보정등록)

제27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날 이후부터 국민투표일 사이에 해당 등록시에 투표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자격을 가지는 자가 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그 자를 즉시 투표인명부에 등록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정 등)

제28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한 기재내용(제20조 제2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한 투표인명부인 경우에는, 기록내용)에 변경이 있었거나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기재(동항의 규정

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한 투표인명부인 경우에는, 기록)를 수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제29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정촌 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러한 자를 즉시 투표인명부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것 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안 때.
2. 등록시에 등록되어서는 아니 되었음을 안 때.

(통보 및 조사의 청구)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9조는 투표인명부등록 자격의 확인에 관한 통보 및 투표인명부의 수정에 관한 조사의 청구에 대해 준용한다.

(투표인명부 재작성)

제31조 공직선거법 제30조는 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대해 준용한다.

(투표인명부 보존)

제32조 투표인명부 및 그 등본은 제127조에 의한 소송이 재판소에 계속되지 않게 된 날 또는 국민투표일에서 5년을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재외투표인명부

(재외투표인명부)

제33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 투표인명부외에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재외투표인명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는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본(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재외투표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혹은 일부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5조의 경우도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재외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등에있어서의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외투표인명부는 해당 국민투표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재외투표인명부 기재사항 등)

- 제34조** ① 재외투표인명부에는 투표인의 성명, 최종주소(투표인이 국외로 주소를 옮기기 직전에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청시(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투표인이 공직선거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영사관 또는 동항에서 규정한 총무성령·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를 말하며,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투표인이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사관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를 말한다. 동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도 같다)의 본적, 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기재(전조 제2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하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있어서는, 기록)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촌의 구역을 나누어 2 이상의 투표구를 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편제하는 투표구(이하 「지정재외투표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전 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재외투표인명부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재외투표인명부 피등록자격)

- 제35조**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은 국민투표일 현재 연령 만 18세 이상인 일본국민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한다.
1. 등록기준일에 해당 시정촌의 재외선거인명부(공직선거법 제4장의 2의 재외선거인명부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항 및 제4항 및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등록기준일에 어떤 시정촌에서든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다음 조 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을 신청한 자(해당 신청에 근거하여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날에 어떤 시정촌에서든 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신청)

- 제36조** ① 국민투표일 현재 연령 만 18세 이상인 일본국민으로, 국외에 주소를 가지는 자(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최종주소 소재지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그자가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신청시 그자의 본적지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제3항 또는 제135조 제5항에 의해 중앙선거관리회가 국민투표일을 고지한 날부터 등록기준일

(등록기준일전 10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등록기준일 사이에 국내의 시정촌에서 국외로 전출(주민기본대장법(1967년 법률 제81호)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전출을 말한다)한 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후 7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신청에 관해 해당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 혹은 공사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해당 영사관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지역인 경우에는 총무성령·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제출하고, 해당 영사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영사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신청자의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자격에 관한 의견을 붙여서, 즉시 해당 신청자의 최종주소 소재지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신청자가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신청시 그 자의 본적지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준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사관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출한 자(등록기준일에서 동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을 제1항에 의한 신청으로 간주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등록)

제37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자가 해당 시정촌의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지는 자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일에 해당 시정촌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2. 전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전 15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다.

③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때는 전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한 영사관을 경유하여 동항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는 증명서(이하 「재외투표인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전조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재외투표인명부 열람)

제38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때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기간,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해당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한 장소에서, 전조 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경유영사관(동항 제1호에서 열거한 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30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영사관을 말하며, 전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한 규정인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조 제3항에 따라 송부한 영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 최종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어떤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자의 성명, 경유영사관의 명칭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제39조 ①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② 행정불복심사법 제9조 제4항, 제19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이러한 규정(행정불복심사법 제44조를 제외한다) 중 ‘심리원’은 ‘심사청’으로, 행정불복심사법 제9조 제4항 중 ‘심사청’은 ‘일본국헌법개정절차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심사청」이라 한다)’로, 동법 제24조 제1항 중 ‘제45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결로’는 ‘결정으로’로, 동법 제31조 제2항 중 ‘심리관계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동법 제44조 중 ‘행정불복심사회 등에서 자문에 대한 답신을 받은 때(전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심리원의견서가 제출된 때,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議)를 거친 때)’는 ‘심리절차를 종결한 때’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4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소송)

제40조 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소송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2항」은 「일본국헌법의개정절차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2항」으로, 「7일」은 「7일(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편및민간사업자에의한서신송달에관한법률 (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서신송달사업자, 동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서신송달사업자 혹은 동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서신송달사업자에 의한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신송달에 의한 송부에 필요한 일수를 제외한다)」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9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소송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9조 제1항 중 「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제207조 혹은 제208조에 따라 한 선거에서의 당선효력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제2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였던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제211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효력 혹은 입후보자격을 다투는 2 이상의 청구 또는 선거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그 선거에서의 당선효력에 관해 제207조 혹은 제208조에 따라 이것을 다투는 청구」는, 「하나의 열람에 관한 재외투표인명부 등록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서의 말소에 관해 다투는 2 이상의 청구」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재외투표인명부 정정 등)

제41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기재내용(제33조 제2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하는 재외투표인명부인 경우에는, 기록내용)에 변경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을 때는 즉시 그 기재(동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하는 재외투표인명부인 경우에는, 기록)를 수정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말소)

제42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정촌의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자를 즉시 재외투표인명부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할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안 때.
2. 등록시에 등록되어서는 아니 되었음을 안 때.

(재외투표인명부 수정 등에 관한 통지 등)

제43조 ① 시정촌장은 그 시정촌에 본적을 둔 자로 다른 시정촌의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타시정촌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자」라 한다)에 대해서 호적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기타의 서류를 수리 혹은 직권으로 호적기재한 경우 또는 호적의 부표(附票) 기재, 삭제 혹은 기재의 수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타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명부를 수정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는 것, 또는 해당 타시정촌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자를 재외투표인명부에서 말소해야 한다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타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9조는 재외투표인명부 등록 자격의 확인에 관한 통보 및 재외투표인명부의 수정에 관한 조사의 청구에 대해 준용한다.

(재외투표인명부 재작성)

제44조 공직선거법 제30조는 재외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대해 준용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보존)

제45조 제32조는 재외투표인명부 및 그 등본의 보존에 대해 준용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한 정령에의 위임)

제46조 제35조부터 전조까지 규정하는 것 외에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절 투표 및 개표

(1인 1표)

제47조 투표는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개정안마다 1인 1표로 한정한다.

(투표관리자)

제48조 ① 국민투표마다 투표관리자를 둔다.

② 투표관리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 중에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자에게 이를 맡게 한다.

③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투표관리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때는 그 직을 잃는다.

⑤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촌의 구역을 나누어 2 이상의 투표구를 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이상의 투표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정투표구의 투표관리자에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투표구가 아닌 다른 투표구에 속하는 투표인이 수행한 제61조에 따른 투표에 관한 사무 중 정령으로 정한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투표입회인)

제49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구에서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 본인의 승낙을 얻어 2인 이상 5인 이하의 투표입회인을 선임하고, 국민투표일전 3일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표입회인으로 참가하는 자가 투표소를 열어야 할 시각이 되어도 2인이 되지 않았거나 그 후 2인에 못 미치게 된 때는, 투표관리자는 그 투표구에서 투표

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 2인이 되도록 투표입회인을 선임하고, 즉시 이것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투표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는 하나의 투표구에서 2인 이상을 투표입회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투표입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투표소)

제50조 투표소는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투표소 개폐시간)

제51조 ① 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투표인의 투표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투표소를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투표소를 닫는 시각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앞당길 수 있다.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함과 동시에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또 즉시 그 내용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소 고지)

제52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어도 국민투표일 5일전에 투표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한 투표소를 변경한 때에는, 국민투표 당일을 제외하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 등록과 투표)

제53조 ①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서 또는 확정판결서를 소지하고 국민투표 당일 투표소로 찾아오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그 자에게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라도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될 수 없는 자일 때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권 없는 자의 투표)

제54조 국민투표 당일(제60조에 따른 투표인 경우에는 해당 투표 당일)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서의 투표)

제55조 ① 투표인은 국민투표 당일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은 투표인명부 또는 그 등본(해당 투표인명부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혹은 일부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9조 및 제70조에서도 같다)의 대조를 거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

제56조 ① 투표용지는 국민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찬성이라는 문자 및 반대라는 문자를 인쇄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별기양식(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또, 제62조에 의한 투표인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 기재사항 및 투함)

제57조 ① 투표인은 투표소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때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찬성이라는 문자둘레에 ○표를 자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때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반대라는 문자둘레에 ○표를 자서한 다음, 이것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점자투표)

제58조 ① 투표인은 점자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때는 찬성, 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때는 반대라고 자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령으로 정하는 점자는 문자로 간주하며, 투표용지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대리투표)

제59조 ① 심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자신이 ○표를 기재할 수 없는 투표인은 제57조 제1항, 제63조 제4항 및 제5항 또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자에게 신청하여 대리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자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물어 투표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 투표인의 투표를 보조할 2인을 정한다. 그 중 1인에게는 기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해당 투표인이 지시하는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에 ○표를 기재하게 하고, 다른 1인은 이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사전투표)

제60조 ① 국민투표 당일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 중 1에 해당한다고 예상되는 투표인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일전 14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날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직무 혹은 업무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용무에 종사하는 경우
- 2 용무(전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사고로 그 속하는 투표구의 구역 밖에서 여행 또는 체재하는 경우
- 3 질병, 부상, 임신, 노쇠나 신체장애로 인해, 혹은 산욕(産褥)으로 보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형사시설, 노역장, 감치장, 소년원, 소년감별소 혹은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섬 기타의 지역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② 전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원 칸에 열거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 중 동표 가운데 칸의 자구를 각각 동표 오른 칸의 자구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48조 제5항 및 제7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 제1항	투표구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
	2인 이상 5인 이하	2인
	3일	15일
제49조 제2항	투표소	사전투표소
	그 투표구에 있어서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
제49조 제3항	투표구에서 2인 이상	사전투표소에서 2인
제53조 제1항	국민투표의 당일, 투표소	제60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일, 사전투표소
제56조 제1항	국민투표의 당일, 투표소	제60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일, 사전투표소
제57조 제1항 및 전조 제2항	투표소	사전투표소
	제74조	제60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74조
제64조	투표소	사전투표소
	최후	해당 투표일의 최후
	투표소	사전투표소
제67조 제1항	폐쇄하지 않으면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 계속해서 해당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하는 경우에는, 그날의 사전투표소를 열어야 할 시각이 된 때는 투표관리자는 해당투표함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투표함을 연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제2항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투표함을 연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투표관리자인 동시에 개	투표관리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사전

	표관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관리자는 1인 또는 다수의 투표입회인과 함께 국민투표 당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기간의 말일에
	을 개표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투표함 등」이라 한다)을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함 등의 송부를 받은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에 해당 투표함 등을 개표관리자

③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다음 표의 원 칸 규정 중 동표 가운데 칸의 자구는 각각 동표의 오른 칸의 자구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시청	국민투표일전 14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날 사이(2 이상의 사전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1의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시청
제51조 제1항	오전 7시	오전 8시 30분
	투표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투표인의 투표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투표소를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앞당기거나 혹은 미루고, 또는 투표소를 닫는 시각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사전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1의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소를 여는 시각을 미루거나, 또는 사전투표소가 닫는 시각을
제51조 제2항	통지하고 또, 즉시 그 내용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제52조 제1항	부터 적어도 5일 전에, 투표소	전 14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적어도 5일 전에, 사전투표소 장소(2 이상의 사전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소 장소 및 해당 사전투표소를 두는 기간)
제52조 제2항	투표소	사전투표소
	국민투표 당일을 제외하	시정촌

- ④ 제1항의 경우에 투표록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재자투표)

제61조 ① 전조 제1항의 투표인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투표 관리자가 관리하는 기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것을 봉투에 넣어 부재자투표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인으로서 신체에 중도의 장애가 있는 자(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법률 제283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전상병자특별원호법(1963년 법률 제168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상병자 또는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개호자인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의 투표에 대해서는 전조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하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것을 우편또는민간사업자에의한서신송달에관한법률(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서신송달사업자, 동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서신송달사업자 혹은 동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서신송달사업자에 의한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신송달(이하 「우편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투표인으로 동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자 가운데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한 자(국민투표 투표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에게 투표에 관한 기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특정국외 파견조직에 속하는 투표인으로 국외에서 체재하는 자 가운데 국민투표당일, 전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동항 및 제1항에 따르는 외,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및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부재자투표 관리자가 관리하는 투표 기재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것을 봉투에 넣어 부재자투표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특정국외 파견조직이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조직 가운데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해당 조직에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가 적정하게 실시된다고 인정되는,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 해당 조직의 장이 해당 조직의 운영에 대해 관리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한

법령에 근거된 권한을 가질 것

2. 해당 조직이 국외의 특정한 시설 또는 구역에 체재하고 있을 것

⑥ 특정국외 파견조직인 조직을 국외로 파견하는 것을 정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국외로 파견되는 투표인(특정국외 파견조직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실제로 특정국외 파견조직이 체재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특정국외 파견조직에 속하는 투표인으로 간주한다.

⑦ 투표인으로 선박안전법(1933년 법률 제11호)에서 말하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본국 이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선원법(1947년 법률 제100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선원을 말한다)인 자 가운데 국민투표 당일 전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동항 및 제1항에 따르는 외,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59조 및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하고, 이것을 총무성령으로 지정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팩시밀리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⑧ 국가가 하는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이 항에서 「남극지역조사조직」이라 한다)에 속하는 투표인(남극지역조사조직에 동행하는 투표인으로 해당 남극지역조사조직의 장의 관리 하에서 남극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선박에 체재하는 자 가운데 국민투표 당일 전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동항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59조 및 제6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재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로 정하는 장소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하고, 이것을 총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팩시밀리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 남극지역에 있는 해당 과학조사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것 - 부재자투표 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

2. 본국과 전호에서 든 시설 사이에 남극지역조사조직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전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 이 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부재자투표 관리자가 해당 선박 선장의 허가를 얻은 장소

⑨ 부재자투표 관리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투표에 입회하게 하는 것 기타의 방법으로 부재자투표의 공정한 실시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투표 등)

제62조 ①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인에 대해서는 제60조 제1항 및 전

조 제1항에 따르면 그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및 다음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투표일전 14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투표일전 6일에 해당하는 날(투표 송부에 수일을 요하는 다른 재외공관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총무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날) 사이에(미리 총무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자신이 재외공관의 장(총무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관리하는 기표 장소에 가서, 재외투표인증 또는 재외선거인증(공직선거법 제30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외선거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제시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투표인이 현재하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것을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방법
- ②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인의 국내투표에 대해서는 제53조 제1항 단서 중 「투표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투표소」는 「지정재외투표구의 투표소」로, 제55조 제1항 중 「투표소」는 「지정재외투표구의 투표소」로, 동조 제2항 중 「투표인명부」는 「재외투표인증 또는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하고, 재외투표인명부」로, 「해당 투표인명부」는 「해당 재외투표인명부」로, 「제20조 제2항」은 「제33조 제2항」으로, 「서류. 제69조 및 제70조에서 같다」는 「서류」로, 제60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전투표소」로, 「투표구」는 「지정재외투표구」로, 동조 제2항의 표 제53조 제1항의 항 중 「제53조 제1항」은 「제62조 제2항에 따라 바꾸어 적용되는 제53조 제1항」으로, 「국민투표의 당일투표소」는 「국민투표의 당일 지정재외투표구의 투표소」로, 「사전투표소」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전투표소」로 한다.
- ③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인의 투표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표인 확인 및 투표 거부)

- 제63조** ① 투표관리자는 투표하고자 하는 투표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본인이라는 취지를 선언하게 하여야 한다. 그 선언을 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② 투표 거부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물어 투표관리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결정을 받은 투표인에 불복이 있을 때는, 투표관리자는 임시로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투표는 투표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표면에 자신

이 그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게 하여야 한다.

⑤ 투표입회인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에 대해서도 또한 전 2항과 같다.

(퇴출당한 자의 투표)

제64조 제74조에 따라 투표소 밖으로 퇴출당한 자는 마지막에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기표소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안 등의 게시)

제65조 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당일, 투표소 내의 투표 기재 장소 기타 적당한 곳에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의 게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에 국민투표공보를 비치하는 것으로 해당 게시에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전 14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투표일의 전일 사이에, 사전투표소 및 부재자 투표관리자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관리하는 투표 기재 장소내의 적당한 곳에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개정안 및 그 요지의 게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 기재 장소에 국민투표공보를 비치함으로써 해당 게시에 대신할 수 있다.

③ 국민투표홍보협의회는 전 2항의 헌법개정안의 요지를 작성한 때는 신속하게 이것을 중앙선거관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회는 전항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것을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과 그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게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다.

(투표의 비밀유지)

제66조 누구도 투표인이 한 투표의 내용을 진술할 의무는 없다.

(투표함 폐쇄)

제67조 ① 투표소를 닫아야 할 시각이 된 때에, 투표관리자는 그것을 알려 투표소의 입구를 폐쇄하고, 투표소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종료되는 것을 기다려 투표함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누구도 투표함 폐쇄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록 작성)

제68조 투표관리자는 투표록을 만들고 투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투표입회인

과 함께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투표함 등의 송부)

제69조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관리자는 1인 또는 수인의 투표입회인과 함께, 국민투표 당일, 그 투표함, 투표록, 투표인명부 또는 그 등본 및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그 등본(해당 재외투표인명부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자기디스크로 작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혹은 일부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 다음 조에서도 같다)을 개표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기투표(繰上投票))

제70조 섬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 국민투표일에 투표함을 송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하게 그 투표일을 정하여 개표일까지 그 투표함, 투표록, 투표인명부 또는 그 등본 및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그 등본을 송부시킬 수 있다.

(투표연기(繰延投票))

제71조 ①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투표할 수 없을 때, 또는 다시 투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어도 5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분회장을 거쳐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제72조 투표인, 투표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투표소를 감시하는 직책을 가지는 자 또는 해당 감찰관이 아니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투표인이 동반하는 유아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투표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야 하는 자로 투표관리자가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 청구)

제73조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경찰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제74조 투표소에서 연설토론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또는 투표에 관해 협의 혹은 권유를 하고, 기타 투표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자

는 이를 제지하고, 명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개표관리자)

제75조 ① 국민투표마다 개표관리자를 둔다.

② 개표관리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자 중에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한 자에게 이를 맡게 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개표관리자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때는 그 직을 잃는다.

(개표입회인)

제76조 ① 정당 등(제10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 등을 말한다. 제4항에서도 같다)은 각 개표구에서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개표입회인이 되어야 할 자 1인을 정하여 국민투표일전 3일까지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가 10인을 넘지 않을 때는 즉시 그 자를 개표입회인으로 하고, 10인을 넘을 때는 신고된 자 중에서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으로 정한 자 10인을 개표입회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을 해야 할 장소 및 일시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규정에 따른 개표입회인이 3인이 안될 때 또는 국민투표일의 전일까지 3인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입회인이 국민투표일 이후에 3인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 또는 개표입회인으로 참가하는 자가 개표소를 열어야 할 시각이 되어도 3인이 되지 않거나 그 후 3인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에는 개표관리자가, 그 개표구의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3인이 될 때까지 개표입회인을 선임하고 즉시 이것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개표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 규정에 따른 개표입회인을 신고한 정당 등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개표관리자가 선임한 개표입회인이 소속한 정당 등과 동일한 정당 등에 소속한 자를 해당 정당 등이 신고한 개표입회인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개표관리자가 선임한 개표입회인과 통틀어서 3인 이상 선임할 수 없다.

⑤ 개표입회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직을 그만둘 수 없다.

(개표소 설치)

제77조 개표소는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표 장소 및 일시의 고시)

제78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개표 장소 및 일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표일)

제79조 개표는 모든 투표함을 송부받은 날 또는 그 익일에 실시한다.

(개표)

제80조 ① 개표관리자는 개표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열고, 먼저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투표를 조사하고,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표관리자는 개표입회인과 함께 각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투표를 개표구마다 뒤섞어서 투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투표 점검을 마쳤을 때는 즉시 그 결과를 국민투표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표의 경우의 투표 효력의 결정)

제81조 투표 효력은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물어 개표관리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다음 조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인쇄된 반대문자에 ×표, 2중선 기타의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말소된 투표는 찬성표로, 투표용지에 인쇄된 찬성문자에 ×표, 2중선 기타의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말소된 투표는 반대표로, 각각 유효로 하고 그밖에 다음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투표한 투표인의 의사가 명백하면 그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무효투표)

제82조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표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3. ○표를 자서하지 않은 것
4. 찬성문자와 반대문자 둘 모두에 ○표를 두른 것
5. 찬성문자 또는 반대문자 중 어느 쪽에 ○표를 두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개표 참관)

제83조 투표인은 그 개표소에 대해 개표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록 작성)

제84조 개표관리자는 개표록을 만들고 개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개표입회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투표, 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

제85조 투표는 유효·무효를 구별하고, 투표록 및 개표록과 함께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27조에 의한 소송이 재판소에 계속하지 않게 된 날 또는 국민투표일에서 5년을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무효에 의한 재투표의 개표)

제86조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가 되어 재투표한 경우의 투표에 있어서는 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표연기(繰延))

제87조 제7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은 개표에 대해 준용한다.

(개표소 감독)

제88조 제72조 본문,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개표소 감독에 대해 준용한다.